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야간 보호)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개포데이케어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02-3412-9988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38 개포빌딩 504호~506호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이용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20:00	일요일 미운영 공휴일 운영
토	08:00~18:00	

-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 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2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20 일
이용료 납부방법	계좌이체 / 국민은행 021901-04-272137

-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일
화
수

'을' 시설장 (인)

(계약자) '갑' 이용자 (인)

(보호자) '병' 대리인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486,8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아·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구분	횟수	금액	비고
간식	2회	1,500원	1회 750원
중식	1회	4,000원	
석식	1회	4,000원	

(2) 아·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후원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개포데이케어센터(이하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 이용
-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활용

-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본 기관과 이용자 간 체결한 급여 계약서 상에 명기된 항목
- ☐ 수집대상 정도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 수집정보 활용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은 급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 된 경우에도 이용자 지원 등 이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본 기관이 이용자에게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업무 및 이용자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이용자(수급자)와의 관계 :

개포데이케어센터 귀중

이용자(보호자) 설명자료 확인서

☐ 설명자료

- | | |
|----------|-----------|
| ① 욕창예방관리 | ② 낙상예방관리 |
| ③ 탈수예방관리 | ④ 배변도움 |
| ⑤ 관절구축예방 | ⑥ 치매예방관리 |
| ⑦ 노인학대예방 | ⑧ 송영서비스수칙 |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귀 기관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상기 욕창예방 관리 등 7가지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는 설명을 듣고, 동 자료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관계 :)

개포데이케어센터 귀중

이 용 서 약 서

이용자 _____은(는) 개포데이케어센터에 입소·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낙상사고 등)가 있을 시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보호자 연대로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알려겠습니다.
2. 개포데이케어센터의 시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 개포데이케어센터의 제반 규정과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물리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개포데이케어센터에서 주관하는 보호자 교육,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6. 보호자는 센터 이용에 있어 송영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데이케어 센터에 책임전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성 명: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개포데이케어센터 귀중

투약 동의서

이용자가 복용중인 약을 본 센터 이용 중에 복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기재한 내용대로 투약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복용 중인 약 병명(예: 고혈압, 당뇨, 파킨슨 등) 및 식전·식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아침	☐ 식전 ☐ 식후
점심	☐ 식전 ☐ 식후
저녁	☐ 식전 ☐ 식후
보호자 요청사항 및 주의사항	
비고	

2. 준수사항

- ① 투약에 의한 책임은 의뢰자(보호자)가 집니다.
- ② 투약에 의한 **약 처방전을 반드시 첨부**하며, 약이 **변경 될 경우에도 변경된 약과 처방전을 센터로 전달**합니다.
- ③ 준수사항 ②번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한 책임은 의뢰자(보호자)가 집니다.
- ④ 센터를 이용하시던 중 가벼운 고열이나 소화불량 등의 상비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보일시에 간호(조무)사의 주관에 의하여 본 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상비약을 투약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인)
간호(조무)사 : (서명 또는 인)

개포데이케어센터 귀중

송영 서비스 보호자(동행) 동의서

개포데이케어센터와 계약을 맺고 송영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송영 서비스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께서 직접 어르신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상황으로 어르신과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
2. 오전 송영 서비스 시간에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탑승시간 1시간 이전에 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병원 예약 등 출석이 변동 될 경우에는 **최소 3일전**에 센터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어르신 성명: _____

보호자 성명: _____ (서명)

개포데이케어센터 귀중